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795 호

2008년 2월 15일 금요일

차 례

조 례

- 조례 제2008- 89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3
- 조례 제2008- 89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10
- 조례 제2008- 89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 29

공 고

- 공고 제2008- 172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구월간석권역))) 31
- 공고 제2008- 173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만수권역))) 34
- 공고 제2008- 175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소래포구(항)정비공사(암반제거) 실시설계용역))) 37
- 공고 제2008- 176호 (기술용역 입찰공고(운연지구 순환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39
- 공고 제2008- 234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41
- 공고 제2008- 235호 (폐기공인 공고) 42
- 공고 제2008- 237호 (공시송달 공고(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 43
- 공고 제2008- 238호 (공시송달 공고(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44
- 공고 제2008- 242호 (공사입찰 공고(서창지구 지장물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 45
- 공고 제2008- 243호 (폐기물 처리용역(전자)입찰 공고(서창지구 지장물 철거 폐기물 처리 용역)) · 49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8년 2월 15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남동구 조례 제89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증명에 대한 신청 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제 증 명 등 수 수 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 사실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1통	1,000원	
(2) 휴 · 폐업사실증명	1통	500원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원	
(2) 토지대금완납증명	1건	300원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납)세 증명	1통	800원	
(2) 납세완납(징수유예, 비과세) 증명	1통	800원	
4. 회계에 관한 증명			
(1) 납품실적증명	1통	300원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1통	300원	
(3) 건설공사(용역) 기성실적 증명	1통	300원	
5. 기타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1건	800원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통	800원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통	800원	
(4) 기타 시설 ·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300원	
(5)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통	1,3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건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 5,000원 계속 3,000원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수수료	1건	600원	
(3)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건	20,000원	
(4) 법인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1건	30,000원	
(5)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	1건	3,000원	
(6)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	1건	6,000원	
(7)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원	
2.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등록	1건	20,000원	
(2) 공연장 변경 등록	1건	10,000원	
(3)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4)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	1건	10,000원	
(5) 게임제공업 허가	1건	25,000원	
(6) 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	1건	15,000원	
(7)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1건	25,000원	
(8)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1건	15,000원	
(9)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1건	25,000원	
(10)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1건	15,000원	
(11)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5,000원	
(12)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1건	15,000원	
(1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1건	25,000원	

(1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1건	15,000원	
(1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1건	25,000원	
(1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1건	15,000원	
(17)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	1건	25,000원	
(18)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사항 변경	1건	15,000원	
(19) 복합유통·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20) 복합유통·제공업 신고사항 변경	1건	10,000원	
(21) 유원시설업 허가	1건	60,000원	
(22)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1건	30,000원	
(23)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1건	30,000원	
(24)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25)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1건	신고 30,000원 변경 10,000원	
(2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27)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사항 변경	1건	10,000원	
3. 건설 및 도시계획관계			
(1) 사도개설허가	1건	500원	
(2)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3)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원	
(4)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500원	
(5)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1건	500원	
(6)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원	
(7) 체비지 분할신청	1필 지	300원	
(8) 환경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필 지	300원	

(9) 환지에정지 변경(분할, 합병)신청	1필지	300원	
(10)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	1건	500원	
(11) 도시계획선 명시도	1필지	5,000원	
(12)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및 열람			
가. 확인-일반발급 (확인도면 포함)	1필지	1,000원	
※ 갈라 발급 또는 확인도면 이외의 별도 도면첨부의 경우	1필지	1,500원	
나. 열람	1필지	100원	
4. 보건사회관계			
(1)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 허가	1건	100,000원	
(2) 의료기관(병원급)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 허가	1건	40,000원	
(3)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개설신고	1건	40,000원	
(4) 의료기관(의원급)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0원	
(5) 안경업소 개설 등록	1건	10,000원	
(6)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1건	10,000원	
5. 공중위생관계			
(1) 이·미용사 신규면허	1건	5,500원	
(2)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3,000원	
(3) 위생처리업 신규	1건	6,000원	
(4) 위생처리업 변경	1건	3,500원	
(5) 세척제 제조업 신규	1건	20,000원	
(6) 세척제 제조업 변경	1건	10,000원	
(7)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규	1건	6,000원	

(8)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1건	3,500원	
(9) 기타			
6. 수산업관계			
(1) 연안어업 허가신청	1건	5,000원	
(2) 구획어업 허가신청	1건	8,000원	
(3)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1건	5,500원	
(4)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600원	
(5)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600원	
(6)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1건	1,600원	
(7) 어업신고	1건	1,600원	
(8) 해상종묘생산어업 허가신청	1건	1,500원	
(9)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10) 어업면허신청	1건	6,000원	
(11) 어업면허연장허가 신청	1건	6,000원	
(12) 어업권(지분)이전 인가신청	1건	5,500원	
(13) 어업권분할 인가신청	1건	5,500원	
(14) 어업권변경 인가신청	1건	4,500원	
(15) 관리선 사용의 지정(어선사용 승인) 신청	1건	4,500원	
(16)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	1건	5,500원	
(17) 면허우선순위 결정 신청	1건	1,000원	
(18) 면허신청기간의 연장 신청	1건	1,000원	
(19) 어업재개신고	1건	1,000원	
(20)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해제 허가 신청	1건	1,500원	

(25)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원	
(21) 어업면허증,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22) 어업권원부 열람 신청	1통	2,500원	
(23) 어업권원부 등(초)본 교부신청	1통	2,500원	
(24)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	1건	1,600원	
(26) 수산물가공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원	
(27) 수산물가공업 등록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 및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 표준안」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에 따른 관련 수수료 규정의 정비 및 신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8년 2월 15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남동구 조례 제89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로명의 변경

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 (복수안)
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추진사유
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심의하여야 한다.

1. 변경 신청된 도로명의 연혁, 제정·변경추진 사유
2. 변경 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
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
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구청장의 의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 (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등을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에 의한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⑦ 구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① 구청장은 영 제21조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3. 해당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4.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우선적으로 통·반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반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로, 노(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대로, 노(路) 이외의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이어야 한다.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설치완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인가서

2. 사업계획도 (축척 3,000분의 1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기간

4. 도로명시설을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 (법 제10조제2항 관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여부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1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철도, 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건축물군, 교차로, 지하철·철도역사,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구청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이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관리계획(일제조사, 훼손·망실에 대한 복구대책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규격
4. 광고사업 참가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광고사업신청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하여야 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④ 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배점부여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광고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장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임기를 요하는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2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을 겸임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도로명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도로명	현행			
	변경희망안	1순위 :		
		2순위 :		
		3순위 :		
변경 신청사유				
희망안별 부여사유	1순위 :			
	2순위 :			
	3순위 :			
건물번호수				
주소사용자수				
변경 동의자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을 신청합니다. 첨부 :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뒤쪽의 양식 활용) 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도로명변경 동의자 명부

[illegible]

[별지 제2호서식]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도 로 명				
건물번호				
건물번호판	규격			
	모양			
	재질			
인천광역시남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설치를 신청합니다. 첨부 : 건물번호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도 로 명				
건물번호				
건 물 번호 판	규격			
	모양			
	재 질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건물번호판 설치사진 2매 (근경사진 1매, 건물 1/3이상 포함된 전경사진 1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도로명부여 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사업시행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사업명				
토지소재				
인가 내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가일			
	면적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인천광역시남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 부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인가서 1부. 2. 사업계획도 1부. 년 월 일 신청인(사업시행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광고사업 신청서				처리기간
				32일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신청내용		1. 도로명주소안내도 2. 안내표지판		
수 행 내 역	인력구성			
	자산규모			
	최근3년간 수행실적			
	기타 실적			
인천광역시남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광고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제작·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표1]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9조제4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15	
	가. 당해 광고사업에 참여할 인력구성	(5)	
	나. 최근 5년간 영업실적	10	
	- 광고 수행실적	(5)	
	- 기타 영업실적	(5)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0	
	가. 제작비용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15)	
	나. 광고주 모집방법의 실현가능성	(15)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30	
	가.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적합성	15	
	- 안내도 종류별 규격의 적정성	(5)	
	- 광고지면의 비율	(5)	
	- 안내도 구성의 참신성	(5)	
	나. 안내표지판의 적합성	15	
	- 안내표지판 디자인의 참신성	(10)	
	-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정성	(5)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25	
	가. 목표대상(인지도 제고)의 적절성	(10)	
	나. 비용대비 효과성	(5)	
	다. 안내도 배포 계획의 효율성	(1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로명 사업을 지원하고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주민홍보 등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도로명주소가 공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 관리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절감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에 관한 내용 (제4조)
-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명시 (제6조)
-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 명시 (제9조)
-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 내지 제18조)
-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 명시 (제19조 내지 제21조)
- 홍보물 제작 종류 명시 및 시책추진 의무 부여 (제22조)
-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 내지 제3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8년 2월 15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남동구 조례 제899호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수가 조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70%를”를 “100분의 50을”로 한다.

제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00원 이하 단수는 절사한다.”

제8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일반 병원보다 저렴한 검사비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내 의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진단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제처의 법령명칭 표준기준에 따라 조례명의 띄어쓰기 적용
-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의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100분의 50으로 하향 (제6조제3항)

공	고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8-172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구월간석권역)
- 공사위치 : 남동구 구월동, 간석동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9일
- 공사개요
 - 가로수관리 ----- 일반전정 400주, 가로수분 제초 7,924주
 - 수벽관리 ----- 22개노선 18,075m
 - 녹지관리 ----- 15개소 4,488㎡
 - 교통섬관리 ----- 4개소 3,389㎡
 - 초화관리 ----- 7개소 37,954본 식재
 - 섬터관리 ----- 6개소 2,322㎡
 - 기 타 ----- 긴급민원처리, 목재 폐기물 처리 30톤
- 설계금액 : ₩249,282,000원(추정가액 226,620,000원 부가가치세 22,662,000원)
- 기초금액 : ₩249,282,000원(금이역사천구백이십팔만이천 원정)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8년 02월 12일(화) 09:00~02월 18일(월)15: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8년 02월 18일(월) 16: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조경 식재공사업 면허소지업체로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249,282,000)의 $\pm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49호, 2007. 9. 20)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 격 심 사 :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49호, 2007. 9. 20)을 적용하고 1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방법 : 조달청 g2b시스템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를 반영하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시스템에 등록된 적격심사관련 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며 별도의 심사 자료의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 시스템이용 불가시는 3일 이내에 별도 서면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업종(실적)평가비율 : 100%(조정식재공사업)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52호 (2007.9.20)] 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2,007,877원, 국민연금보험료 : 3,456,418원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공사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과 조경팀(032-453-286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2월 1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8-173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만수권역)
- 공사위치 : 남동구 만수동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9일
- 공사개요
 - 가로수관리 ----- 일반전정 1,300주, 가로수분 제초 11,092주
 - 수벽관리 ----- 21개노선 16,435m
 - 녹지관리 ----- 28개소 44,498㎡
 - 교통섬관리 ----- 3개소 2,052㎡
 - 초화관리 ----- 5개소 25,280본 식재
 - 쉼터관리 ----- 3개소 456㎡
 - 나무은행관리 ----- 4개소 2,718㎡
 - 수목굴취/운반 ----- 6,950주
 - 기 타 ----- 긴급민원처리, 목재폐기물 처리 40톤
- 설계금액 : ₩279,323,000원(추정가액 253,930,000원 부가가치세 25,393,000원)
- 기초금액 : ₩279,323,000원(금이억칠천구백삼십이만삼천원정)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8년 02월 12일(화) 09:00~ 02월 18일(월)14: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8년 02월 18일(월) 15: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소지업체로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279,323,000)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49호, 2007. 9. 20)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49호, 2007. 9. 20)을 적용하고 1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방법 : 조달청 g2b시스템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를 반영하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시스템에 등록된 적격심사관련 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며 별도의 심사 자료의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 시스템이용 불가시는 3일 이내에 별도 서면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업종(실적)평가비율 : 100%(조경식재공사업)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52호(2007.9.20)]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2,272,923원, 국민연금보험료 : 3,912,674원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공사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과 조경팀(032-453-286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2월 1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8-175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소래포구(항)정비공사(암반제거) 실시설계용역
- 용역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352번지앞 소래철교부근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사업개요 : 측량(수심) 1식, 지질조사(수중보링) 2공, 실시설계 1식
- 설계금액 : ₩24,623,000원 (추정가액 22,384,540원, 부가가치세 2,238,460원)
- 기초금액 : ₩24,623,000원

2. 입찰일시 및 장소

- 접수개시일시 : 2008년 2월 13일(수) 14:00
 - 접수마감일시 : 2008년 2월 20일(수) 14:00
 - 개찰일시 : 2008년 2월 20일(수) 15:00
 - 개찰장소 : 남동구 경영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 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설부문(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하고, 측량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측량업(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 (₩24,623,000)의 $\pm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천한(2개씩 선택)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합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 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4) 또는 건설과 기반 조성팀(032-453-2742)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2월 1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8-176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운연지구 순환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용역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56-2번지 일원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 사업개요 : 실시설계 1식, 측량 1식
- 사업규모 : 연장 L=1,369m, 폭 B=6~10m
- 설계금액 : ₩80,986,000원 (추정가액 73,623,630원 부가가치세 7,362,370원)
- 기초금액 : ₩80,986,000원

2. 입찰일시 및 장소

- 접수개시일시 : 2008년 2월 13일(수) 13:00
- 접수마감일시 : 2008년 2월 20일(수) 13:00
- 개찰일시 : 2008년 2월 20일(수) 14:00
- 개찰장소 : 남동구 경영제정과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 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설부문 (토질및 기초, 도로및공항, 토목구조)신고를 필하고,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 기초금액 (₩80,986,000)의 $\pm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천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45호, 2007. 07. 25)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 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 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제정과 경리팀(032-453-2264) 또는 건설과 도로시설팀(032-453-272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2월 1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8-234 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8. 2. 28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8. 2. 13 ~ 2008. 2. 28
2. 대상 자동차

신청대상차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명	사용본거지			
인천30고 7834	윤석하	인천 남동구 남촌동 488-10 궁전빌라 10/401 15/4	서울지방법원 (사건97카단41384)	박영군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29-63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453-2941)

2008년 2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8-235호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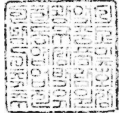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인 폐기

- 폐기 사유
 -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사업 중단(지역경제과)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에 따라 기존부서명 폐지(보건행정과)
 - 현장민원실 운영 중단(논현고잔동)
- 폐기년월일 : 2008. 2. 15
- 폐기 공인명 및 인영

폐 기 공 인 명	인 영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상품및취업박람회 추진위원장인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분임물품출납원인	
논현고잔동장인 (논현 고잔동민원전용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논현고잔동장전용1)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8-237호

공 시 송 달

식품위생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8. 02. 14 ~ 02. 28

2. 공고사항

-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
- 당 사 자

업 종	신 고 번 호	업소명	소재지	업주명	주민등록 번 호
일 반 음식점	만수2-147	짬우동	만수동 869-2	장운수	720406- 1*****

-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 처분사유 : 영업시설물 전부멸실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제58조 및 동법 제64조
 -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 담당부서 : 위생과 식품위생팀(032-453-2623)
 - 청문일시 : 2008.03.10 (월) 11:00
 - 청문장소 : 남동구청 위생과(6층) 사무실
 - 청문주재자 : 남동구청 위생과 위생관리담당
3. 기 타 : 청문 불참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2008년 2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8-238호

공 시 송 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명령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8. 02. 14 ~ 2008. 2. 28

2. 공고사항

○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당 사 자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소재지	업주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지
일 음식점	만수3-57	왕골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66외 1필지	김만석	760326-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98-149 신세계빌라 101호

○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 (2008.02.01)

○ 처분사유 : 영업시설물 전부멸실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제58조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위생과 식품위생팀 (전화 : 032-453-2623)

2008년 2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8-242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서창지구 지장물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		
총공사비	421,640,000원	공고기간	2008.02.15 ~ 2008.02.27
기초금액	381,640,000원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08. 02. 15.(금) 16:00
추정가격	346,945,454원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08. 02. 27.(수) 13:00
부가가치세	34,694,546원	개찰일시	2008. 02. 27.(수) 14:00
관급자재비	39,360,000원	입찰장소	남동구 도시개발과 입찰집행관pc

※ 현장설명은 설계서로 갈음

2. 공사설명

- 위치 : 인천.남동구.서창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43블럭 4,5,6,7,9,10,11롯트
- 공사개요
 - 삼화빌라 철거공사 : 7개동
 - 주차장 조성공사
 - ▶ 토 공 = (흙깎기-1,034m³, 흙쌓기 - 666m³, 사토 - 231m³)
 - ▶ 배수공 = (U형측구 - 158m, 우수받이 - 2개소)
 - ▶ 포장공 = (표층(T=5cm)-10a, 기층(T=10cm)-10a, 보조기층(T=20cm)-210m³
동상방지층(T=30cm)-315m³, 잔디블럭(T=15.5cm)-670.5m²
 - 부대공 1식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4.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 공사입니다. 전자입찰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5.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등록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계속 소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 포함)를 제출한 것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본 공고건은 인터넷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G2B)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 개시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제출 가능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9.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적격심사시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실적만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는 행정자치부예규 제182호, 제249호(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가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가격입찰결과 1순위까지의 업체에게만 개별통지하고 심사결과 적격대상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예정일은 적격심사 완료후 3일 이내 통보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 금1,471,562원
- 국민연금보험료 : 금2,533,190원
-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위에 고시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89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하도급공사 포함)

11.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공공기관및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공사 및 설계내용 : 남동구 도시개발과 (032-453-2983)
- 입찰공고·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남동구 도시개발과(☎032-453-2953)
- 개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 나라장터(<http://www.g2b.go.kr>)

2008년 2월 15일

남동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8-243호

폐기물 처리용역(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서창지구 지장물철거 폐기물 처리용역
- 용역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43블럭 4,5,6,7,9,10,11
- 용역량 (운반.처리)
 - 콘크리트 처리 : 3,837톤
 - 아스콘 처리 : 11톤
 - 혼합폐기물 처리 : 468톤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용역예정금액 : 107,910,000원
(추정가격 98,100,000원, 부가가치세 9,810,000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 : 107,910,000 원

2. 전자입찰 및 개찰

- 입찰개시 및 마감 : 2008. 02. 15(금) 16:00 ~ 2008. 02. 27(수) 14:00
- 개찰 : 2008. 02. 27(수) 15:00 도시개발과 입찰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 지역제한 대상용역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 청렴계약 시행대상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계약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등을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으로 입찰참가 가능하며 구성원사도 인천광역시 지역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개발과 (032-453-2982)
- 기간 : 2008년 02월 26일 18 : 00 까지
- ※ 설계도서의 검토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 서류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1) 입찰보증금 납부 약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60호, 2007. 10. 05)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pm 3\%$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을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07-116호 2007.07.27 별표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 적격심사 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입찰 및 적격심사결과 동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우리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설계도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개발과 ☎ 032-453-2982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08년 2월 15일

남동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경리관